 금융위원회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특정한 금융
	보도	2016.5.26(목) 석간 이후	배포	2016.5.25(수)
책임자	금융위 은행과장 이윤수(02-2100-2950)	담당자	송현지 사무관 (02-2100-2954)	

제 목 :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6개월간 이용 현황

-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(은행권 15.12.1~, 제2금융권 16.2.22~) 이후 약 6개월간 15.9만건의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신규 개설
- 향후 실명확인증표 인정범위 확대 등 실명확인방식을 보다 다양하게 인정 관련 금융법령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하여 효율적·인정적 운영 지원

I 이용현황

-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이후 약 6개월(제2금융권은 3개월)간 31개 금융회사로부터 15.9만건의 계좌가 비대면으로 발급

<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금융회사 현황('16.5.20일 기준) >

	증권	은행	클라우드 펀딩
회사 수	19	12	8
발급 계좌 수	127,581	31,212	

- 특히, 증권사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총 발급계좌의 약 25%가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등 비대면 실명확인의 활용도가 높은 편
 - * '15년 월평균 증권사의 수시입출금 발급계좌수(17만좌)를 기준으로 추정
 - 대면채널 부족에 따라 누적되어있던 계좌개설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었고 증권사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함에 기인
- 반면, 은행은 지점 접근성이 높고, 아직까지 은행권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제한적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적음
 - * 대다수 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 "계좌범위" 및 "고객"을 제한하여 운영 중 (예 : 대출계좌 발급 X, 예금계좌 발급 O)

-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신분증 사본 제출 + 기존계좌 활용(→금융회사 지정 계좌로 이체) + 핸드폰 인증 방식을 조합하여 비대면 실명확인
- 향후 다수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 노력을 함으로써 이용고객수 지속 증가 예상
 - 은행권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, 계좌이동제 활성화에 대비,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 고객군과 업무범위를 확대 예정

< 시중은행 서비스 현황 및 계획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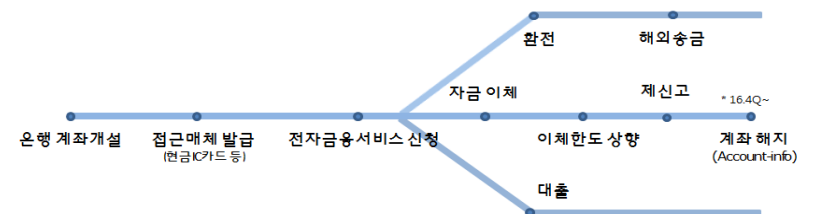
	현행	향후 계획
하나	요구불계좌 개설,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한정	+ 모든 전자금융서비스 + PC 웹페이지
신한	요구불계좌(2종 한정) 개설	+ 예·적금 계좌 개설
우리	대출고객 한정 계좌개설	+ 전고객 대상 계좌개설
국민	요구불계좌 개설	+ 해외송금, 여러 가지 신고
기업	예금 계좌 개설	+ 적금 계좌

- 제2금융권의 경우 중소형 증권사 및 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이 추가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

II 평가

- 계좌개설에서부터 계좌해지까지 금융거래 소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한층 제고
- 은행업무 : 계좌개설 이후 종전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접근매체 발급, 전자금융서비스 신청, 이체한도 상향, 해외송금 등이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

< 은행 비대면 업무처리 프로세스 >



- **금융투자업무** : 증권계좌 비대면 발급으로 **고객 접근성이 크게 증가**, 최근 투자자문 및 ISA투자일임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

< 증권사 비대면 업무처리 프로세스 >



- 일부 증권사는 은행에 주던 계좌개설 위탁 수수료 절감분을 **비대면 계좌 수수료 인하** 등으로 **전환**하여 적극적으로 고객 유인
- 온라인 시장에서 **비대면 실명확인 허용**을 계기로 관련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
 - 은행의 경우 '온라인 브랜드*'를 별도 출시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활용하는 등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경쟁에 대비
 - * 예 : (신한) 씨니뱅크 (우리) 위비뱅크 (기업) 아이원뱅크 (하나) 원큐뱅크
 - 점포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**지방은행, 외국계은행** 및 증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극 **활용**하여 **위탁비용 감소** 및 **채널 경쟁력 제고**

III 향후 계획

- 「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」을 지속 보완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**보안성** 및 **이용자 편의성**을 개선

※ **개선과제 예시** (금융회사 요청사항 반영)

- 실명확인 증표에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외 '여권' 추가
- 기존계좌 활용방식의 경우 고객의 **금융회사에 대한 소액 이체** (고객→금융회사) 이외에 **반대방향의 이체** 방식(금융회사→고객)도 허용

- 금융 현장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 명확성 제고를 위해 「**금융 실명거래 업무해설서**」 전면 개정(은행연합회 등, 6월 중)

※ 첨부 : 비대면 실명확인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듣게 들었습니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